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5
----------	-----

2019. 9. 2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8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8월 22일

－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－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옥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, 퇴직시기를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로,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로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년(안 제9조제3항) - 정년을 60세로 함
- 퇴직시기(안 제9조제4항)

-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
- 정년이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
-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11조제8항)
 - 문화예술과장 → 문화예술산업과장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광영학)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만58세에서 60세로 하는 것임.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9조 제1항을 살펴보면 “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,
 -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상한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 -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의학발달로 평균수명이 80세에서 100세까지 연장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획일화 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, 이것이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령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.
- 향후 충청북도에는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나 정책에서도 근로자 정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24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옥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8월 13일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8월 13일

발 의 자 : 이옥규, 전원표, 허창원,
송미애, 연철흙, 정상교
하유정

1. 개정이유
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, 퇴직시기를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로,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로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년(안 제9조제3항)
 - 정년을 60세로 함.
- 퇴직시기(안 제9조제4항)
 -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
 - 정년이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
-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11조제8항)

- 문화예술과장 → 문화예술산업과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

다. 예산조치 : 관계없음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을 “위촉기간 및 정년”으로 하고,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단원과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제11조제8항의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화예술산업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촉기간 및 연령) ① 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직원은 규칙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하로 한다.</p>	<p>제9조(위촉기간 및 정년) ① 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직원은 규칙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③ 단원과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</p>
<p>제11조(운영자문위원회) ①~⑦ (생략)</p> <p>⑧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.</p>	<p>제11조(운영자문위원회) ①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문화예술산업과장이 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19조(정년)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